



서울중앙지방법원

결정

사 건 2013머9488(2012가단329057) 손해배상(기)
 원 고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음
 피 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
 서울 중구 서소문동 135 올리브타워
 대표이사 조재홍
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(유)올촌 담당변호사 김경연, 문형철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결정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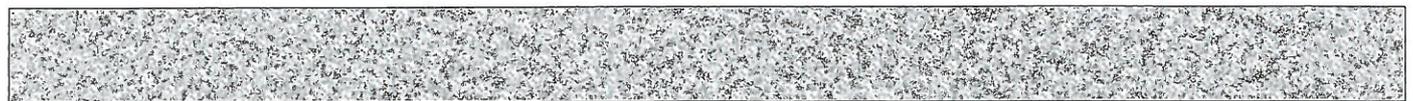
1.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고,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.
2.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

청구의 표시

청구취지 : 피고는 별지 제2목록 '㉠'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'㉡'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.

청구원인 : 피고를 포함한 생명보험회사들의 불법, 부당한 담합으로 인하여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함





2014. 9. 25.

상임 조정위원 황 덕 남



※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,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



정본입니다.

2014. 10. 1.

서울중앙지방법원

법원주사 이상후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